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5년 6월 7일(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5년 6월 8일
- 다. 상정일자 : 2005년 6월 16일(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 학생회관에 증축중인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과 기 운영중에 있는 한글사랑관의 운영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회관장의 관장 사항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하고(안 제19조),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며(안 제23조),
-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어, 소관 업무를 통합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안 제24조),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중갑)

-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줌과 동시에 국제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충북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개인별 해외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
- 학생회관내에 증축하는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 그리고 기 설치·운영중에 있는 한글사랑관 운영을 충청북도학생회관장의 관장 사항으로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 신설되는 시설의 관리인력 확보 방안,
 - 외국어학습원의 세부 관리계획 및 학생종합수련원과의 연계 관리 필요성 여부,
 - 교육박물관과 안전체험관의 기본운영계획,

- 현재 운영중에 있는 한글사랑관을 학생회관내로 이전하는 사유와 이전할 경우 기존 건물의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

제6절을 제7절로,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6조 내지 제28조로 하고, 제6절(제23조 내지 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제2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둔다.

제24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한다.

제20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u>(이하 “법”이라한다) 제 33조 내지 제36조 및 <u>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u>(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4조(설치) ①법 제34조 및 <u>도서관및독서진흥법</u>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1조(목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p> <p>.....</p>
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p>제19조(업무) (생략)</p> <p>1. ~ 4. (생략)</p> <p><신 설></p>	<p>제19조(업무)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u></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설치) ①법 제3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20조(설치) ①..... 「청소년기본법」</p>
<p><u><신 설></u></p>	<p><u>제6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u></p>
<p><u><신 설></u></p>	<p>제2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둔다.</p>
<p><u><신 설></u></p>	<p>제24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p><u>제6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u></p> <p>제23조(설치) ①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 ·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p> <p>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u>제7절 (현행과 같음)</u></p> <p>제26조(설치) (현행과 같음)</p>
<p>제24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27조(소장)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제25조(업무)</u>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 2. 실업계 교원의 농업 또는 공업관련 특별연수 3.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p><u>제28조(업무)</u>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직속기관등의 하부조직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교육청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